

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제1항 본문중 "건설부장관"을 "건설교통부장관"으로 하고, "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"를 "경우(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)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주택조합이 신탁등기를 함으로써 과세하는 때에는 조합원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때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감면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한다"로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